

2020년 11월 15일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서명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으로, 상품무역, 서비스 무역,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다루는 현대적이고,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RCEP에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까지 총 15개국을 포함(인도는 탈퇴)하고 있어,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 본 내용은 RCEP 협정문의 원산지 규정을 중심으로 분석한 자료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1. 양허표 확인 사이트

<https://www.fta.go.kr/rcep/doc/2/>의 부속서 1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발급방식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 ① 기관발급 ② 인증 수출자에 의한 자율발급 ③ 각 협정국 별로 규정한 기간 내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자율발급 - 협정 발효일로부터 10년 이내 :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협정 발효일로부터 20년 이내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 유예기간: ③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자율발급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양식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양식에 대한 규정 없음. 다만, ANNEX 3B MINIMUM INFORMATION REQUIREMENTS에 규정된 사항이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서상 기재되어야 함.
작성주체	수출자, 생산자 그리고 권한을 받은 대리인
작성언어	영어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협정세율 적용	원칙 - 수입시점에 특혜관세 신청 사후적용 - 세부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수입국의 법률과 규정에 의한 기간에 따라서 사후 적용 가능
제출 면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미화 200달러 이하

3. RCEP 협정의 특징

(1) 미착 물품에 대한 경과 조치

- (a) 제3.15의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시키는 운송 중인 물품 또는
- (b) 수입 당국으로 수입되지 않은 물품은

본 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3.22조에 따라 적정한 협정 적용을 한 경우 특혜 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누적기준

RCEP 협정에 근거한 원산지 물품이 다른 당사국에서 조달, 가공한 경우, 최종재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그 다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는 재료 누적이 허용됩니다.

** 유보기간 :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재료 누적이 확장에 대하여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동안 검토 가능

4. 원산지검증방식

혼합검증(수출관세당국에 의한 간접검증 진행 후, 당사국간 합의에 따라 수입관세당국의 직접검증 가능)방식을 채택합니다.

5. 향후 스케줄

2020년 11월 15일, 15개국의 장관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향후 RCEP은 비준을 위해 국무회의 및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아세안 10국 중 6국 이상, 비(非) 아세안 5국 중 3국이 국내 비준 후 사무국에 비준서를 보내면 60일 후 발효됩니다.

※ 본 내용은 RCEP 협정문을 중심으로 분석한 내용이며, 협정문의 세부 규정은 RCEP 정식 발효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